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6.>
■ 労働者退職給付保障法施行規則 [別紙第1号書式] <改正 2019年7月26日>

- ☐ 확정급여형

☐ 確定給付型

☐ 확정기여형

☐ 確定拠出型

☐ 혼합형

☐ 하이브리드型

퇴직연금규약

退職年金規約

신고서

届出書

※ 뒤쪽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裏面の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表面)

발급번호 發給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發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7일 7日	
신고내용 届出内容	사업명(사업장명) 事業名 (事業場の名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대표자 성명 代表者の氏名		업종(주산품) 業種 (主たる事業)		
	상시 근로자 수 常勤者数	명 名	노동조합원 수 労働組合員数	명 名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팩스(Fax)번호 FAX番号		
	퇴직급여제도 형태 退職給付制度 の種類	<div>☐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iv> <div>☐ 確定給付型退職年金制度 ☐ 確定拠出型退職年金制度</div> <div>☐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div> <div>☐ 「労働者退職給付保障法」第6条に基づくハイブリッド型退職年金制度 (裏面参照)</div> <div>☐ 퇴직금제도</div> <div>☐ 退職金制度</div> <div>※ 해당 사업(사업장)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div> <div>※ 当該事業 (事業場) に適用される退職給付制度すべて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div>			
	의견청취일 또 는 동의일 意見聴取日 又は同意日	년 월 일 年 月 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신규 / 변경)합니다.

「労働者退職給付保障法」第13条・第19条及び同法施行規則第2条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退職年金規約を届出（新規/変更）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사업장 대표)
届出人 (事業場の代表)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地方雇用労働庁長 (支庁長)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p>[신고의 경우] [届出の場合]</p> <p>1. 퇴직연금규약 1. 退職年金規約</p> <p>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労働者代表の同意を受けたか、意見を聞いたことを証明する資料</p> <p>[변경 통보의 경우] [変更通知の場合]</p> <p>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1. 変更前と変更後の内容を比較して作成した退職年金規約</p> <p>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労働者代表の同意を得たことを証明する資料 (動労者に不利な変更のみ該当する) 又は労働者代表の意見を聞いたことを証明する資料 (動労者に不利な変更ではない場合のみ該当する)</p>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요령
記入方法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1. 「事業名（事業場の名称）」の欄には「事業者登録証」の商号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2. 「代表者の氏名」の欄には「事業者登録証」の代表者の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3. 「業種（主たる事業）」の欄には「事業者登録証」の業種・業態を記入してください。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4. 「常勤者数」の欄には「(年間労働者数) ÷ (事業場の年間稼働日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5. 「労働組合員数」の欄には労働組合員がある場合に組合員数を記入し、ない場合は「0」と記入してください。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6. 「住所」の欄には「事業者登録証」上の本店の所在地を記入してください。
7.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업무 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7. 「電話番号」の欄には事業場の退職給付制度の業務担当者に連絡可能な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8. “팩스(Fax)번호”란에는 사업장의 문서 수신이 가능한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8. 「ファックス（Fax）番号」の欄には事業場の文書を受信できるFAX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은 신고(신규/변경) 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9. 「退職給付制度の種類」の欄には届出（新規/変更）をした当該事業（事業場）に適用される退職給付制度すべて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두 제도를 각각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두 제도에 가입되는 기간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하이브리드型退職年金制度は「労働者退職給付保障法」第6条に基づき、使用者が加入者に対して確定給付型退職年金制度及び確定拠出型退職年金制度を同時に設定した場合を指します。（使用者が両制度をそれぞれ設定し、加入者がそのうちいずれかを選択する場合、又は加入者が両制度に加入する期間をそれぞれ異にして運営する場合はそ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10.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란에는 신고(신규/변경)하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0. 「意見聴取日又は同意日」の欄には届け出（新規/変更）を行う退職年金規約を作成するために、労働者代表の意見聴取を行った日若しくは同意を受けた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11.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11. 「労働者代表」とは労働者の過半数が加入した労働組合がある場合はその労働組合を、労働者の過半数が加入した労働組合がない場合は労働者の過半数をいいます。（「労働者退職給付保障法」第4条第3項）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申告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